

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10.

발 의 자 : 배영민 의원외 7인

□ 개정이유

-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3.11.17일 「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」를 제정 도서 주민에 한하여 여객운임의 50%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
- 백령도를 비롯한 인천의 도서지역은 수도권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으나 여객선 요금이 백령도의 경우 왕복 10여만 원이 소요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어려운 실정임
- 정부에서는 2005. 8. 4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여객선 운영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
- 금번 도서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「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」를 개정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지원대상 확대에 맞춰 “인천광역시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”로 개정함
-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을 도서주민에서 인천광역시 전 시민으로 확대함(제2조 제1항)
- 지원금액에 있어 도서지역 주민 및 그 외 지역주민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2조 제2항)

□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발취사항
-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
-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시행규칙

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“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관내 전 도서(이하“도서”라 한다)”를 삭제하고, 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”를 “함은 물론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운임지원) ①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.

②운임지원금의 비율,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하며, 지역간 차등을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제35조의2(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해운법」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5.8.4]

□ 해운법

제8조(운임과 요금)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(이하 "여객운송사업자"라 한다)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改正 1995.12.29, 1997.12.13, 1999.4.15>

②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적정한 운임 및 요금의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<개정 1995.12.29, 1997.12.13, 1999.4.15>

[全文改正 1993.3.10]

□ 해운법시행규칙

제7조(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)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(이하 "여객운송사업자"라 한다)로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1996.8.7, 1997.8.7, 1999.10.8>

1. 원가계산서등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
2. 구간제 운임 및 요금에 있어서는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
3. 운임 및 요금의 신·구대조표(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)

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개정 1995.1.9, 1997.2.6>

1. 운임 및 요금의 신고요령
2.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계산 방법
3.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

[전문개정 1993.6.23]

제8조(외항여객운송사업자등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<개정 1999.10.8>)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외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기타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1993.6.23, 1997.2.6, 1999.10.8>

1.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
2. 운임 및 요금의 신·구대조표(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)

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

제정 2003-11-17 조례 제3706호

개정 2004-03-29 조례 제3739호

개정 2004-11-08 조례 제3788호

전문개정 2006-03-20 조례 제389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북분단으로 주 생활권이 인천광역시가 된 최북단 접경지역내 서해5도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관내 전 도서(이하 “도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(도선의 여객운임 포함)의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육지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, 도서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임지원 대상 주민) 여객선운임 지원대상 주민은 제1조에서 규정한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.

제3조(지원운임의 부담주체와 재원) ①지원운임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(이하 “재정지원금”이라 한다)으로 부담한다.

②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」에 의거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.

제4조(재정지원금 기준) ①재정지원금의 산출기준은 지원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도선사업자(이하 “여객선사”라 한다)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된 여객운임을 근거로 한다.

②재정지원금 산출은 실제 여객선 이용주민수 × 1인당 운임지원금으로 한다.

③여객선 이용객 1인당 운임지원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운임지원금 지급 절차) ①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정지원금을 강화군수·옹진군수와 중구청장(이하 “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교부하고, 여객선사는 운임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·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한다.

②운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·구청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

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에 지급한다. 다만, 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다.

제6조(업무협약체결) 군수·구청장은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.

제7조(전산 발권) ①투명하고 효율적인 도서민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(이하 “해운조합”이라 한다)이 연안여객선 승선권에 대한 전산대표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, 군수·구청장은 해운조합에 전산대표시스템에 필요한 관할 도서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민등록 정보의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여객선사는 도서민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전산대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권하여야 하며, 대표 전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도서민 운임에서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을 차감한 할인운임을 적용하여야 한다.

③여객선사는 도서민 중 노인, 소아, 장애인 등 여객선사 자체 추가할인율(이하 “추가할인율”이라 한다)을 적용하고 있는 여객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할인운임이 적용된 도서민운임에 추가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대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전산대표시스템에 의해 발권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도서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 대표하며, 전산대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한 즉시 별도 대표한 사항을 일괄 전산대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⑤군수·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대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서민 승선권을 발권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의 일부를 해운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부대비용 지급절차) ①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도서민 운임지원에 따른 전산발권시스템의 확대구축으로 인한 비용

2. 도서민 인증시스템과 관련한 비용

②군수·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해운조합에게 지급하며, 이 경우 재원은 국비보조금에서 충당한다.

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해운조합이 군수·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하며, 군수·구청장은 신청금액과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시비보조금에서 지급한다.

제9조(집행 계획수립 및 실적 보고) ①군수·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군수·구청장은 분기별 집행실적을 시장에게 매 분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홍보와 주의의무) ①여객선사는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

②여객선사는 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정보를 도서민 인증이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여객선사는 도서민이 아닌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로 도서민 승선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21조제2항제8호 또는 「형법」 제314조제1항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사는 도서민이 아닌 자가 도서민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 산및관리에관한조례」에 의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①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국가에서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상여객 운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지원율은 조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 <2004-03-29 조례 제3739호>

이 조례는 200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-11-08 조례 제3788호>

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6-03-20 조례제38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6-04-03 규칙 제255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임지원금 산정) ①조례 제4조제3항의 도서민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, 100원 미만금액은 절상한다.

1. 지원당시 정규운임(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)의 50%
2. 제1호와 내항 여객선사의 자체 할인율을 적용하고도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항로에 2개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하는 경우에는 정규운임이 가장 높은 여객선에 적용된 운임보조율을 나머지 여객선의 정규운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운임보조율 = (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 + 여객선사의 할인금액) ÷ 정규운임

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할 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운임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다.

운임지원금 =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 × (1 - 추가할인율)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운임지원금 산정에 대한 소급적용)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은 조례시행일부터 적용한다.